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순천만정원 사랑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순천만정원 사랑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<u>하나 순천만정원 사랑 적금</u>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』(구 하나은행) 및 『<u>적립식 예금약관</u>』(구 하나은행) 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및 법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8 조 (생략)</p>	<p>『순천만정원 사랑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 범위 “<u>순천만정원 사랑 적금</u>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』 및 『<u>적립식예금 약관</u>』 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및 법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8 조 (좌동)</p>	<p>구행명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